

과업지시서

<서식 및 내용 변경 가능>

[물품 규격서]

1. 물품내역

“원형결속기 구입”

2. 규격서

“ 별첨참조”

3. 비고(특징)

[납품사항]

- 납품 할 농기계는 농업기계가격집 (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)에 수록된 기종이며, 새 제품이어야 한다.
- 장소는 수요자가 인도 할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.
- 농기계를 납품함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형식 및 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.
- 납품 완료 시 보조사업자의 농기계 검수를 받아야 하며, 불합격된 농기계에 대하여는 신청된 동일제품으로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.
- 농기계 검수 시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, 파손(불량)된 부분이 있을 경우 즉시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.
- 물품을 재 납품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.
- 공급농기계는 제조자명, 제조 년·월·일, 제조사 연락처, 제조번호 등이 기입된 형식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.
- 물품 공급업자는 사후에 농기계 사후봉사업소(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제18조 규정) 필증 및 해당물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공급확약서, 사후봉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.

[A/S 사항]

- 물품 납품 시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사후하자 무상수리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.
- 납품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내구연수 동안 농기계 사후 봉사를 할 수 있어야 하며, 농기계 수리 요구 시 신속히 응해야 한다.

- 계약자는 물품의 A/S 지정등록업체 또는 농기계 수리 지정등록업체 이어야 한다.
- 물품은 납품일 기준 최신 제조 및 생산한 물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, A/S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상으로 한다.
 - 납품시 하자이행 보증증권(2년 이상)을 제출하여야 한다.

[기타 사항]

- 계약자는 구입장비 목록에 기재된 농기계를 납품 할 수 있어야 하며, 계약자의 과업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계약이행 상황이 불성실 할 경우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으며,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.
 - 농기계 납품 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
 - 농기계 납품 조건에 의한 요구를 3회 이상 불응 했을 때
 - 기타 관계법령 및 계약·납품 조건을 위반 했을 때
- 납품한 농기계에 대한 취급설명서, 정비지침 매뉴얼(한글)을 제공해야 한다.